

의안번호	2213550
의 퇴 인	안태준의원
회 답 일	2026. 3. 5.
추 계 번호	25B538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3. <u>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 시설(역사를 포함한다)의 설치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²⁾에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한국도로공사, 지하철도 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학교법인,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지자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음
 -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1)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2)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표 1] 도로 점용료 및 감면액 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도로관리청	2022		2023		2024	
	점용료 수입	감면액	점용료 수입	감면액	점용료 수입	감면액
국토관리청	15,366	13,398	15,868	13,222	15,549	12,731
한국도로공사	1,180	1,659	1,215	1,793	1,104	796

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수입 및 감면액 현황은 통계 등 관련 자료가 없어 미포함함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현행 점용료 감면대상인 전기통신시설 등과 함께 상·하수도 시설, 철도시설(역사 포함)의 설치 사업 등을 현행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예시로 열거하려는 것임

[표 2] 개정안에 따른 점용료 감면 대상의 현행 감면 현황

개정안에 따른 감면 대상	현행 점용료 감면 대상	현행 감면율	현행 감면근거법령
전기통신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전기통신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50%	법 제68조제3호, 시행 령 제73조제3항제3호
상·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국가·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상·하수도 사업	100%	법 제68조제1호, 시행 령 제73조제3항제1호 가목
	영리 목적의 상·하수도 사업	—	—
도로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도로시설인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 는 사업으로, 이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므 로 도로점용허가 미대상임	도로점용허가 미대상 (점용료 미부과)	
철도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국가철도공단 등이 시행하는 선로 및 통신· 신호시설 설치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 리사업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	100%	법 제68조제1호, 시행 령 제73조제3항제1호 가목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시설 설치 사업인 역 시설 개량사업 등	—	—

주: 부분은 현행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현행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 아닌 ‘상·하수도시설 및 철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의 세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 등을 알 수 없고, 향후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규모 역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도로 점용료 감면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